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DAO의 법적 쟁점에 관한 진단과 전망

-종합토론-

이석민

(한국DAO법연구회 공동대표, 서울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인하대 초빙교수)

중요하고 까다로운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 발표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학 및 DAO, NFT 관련 기술에 소양이 있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평서문으로 서술합니다.

주지하다시피,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DA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탈중앙화, 분권화된 자율적 조직을 말한다. DAO도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과 규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DAO의 규칙은 블록체인에 코드, 즉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으로 작성해놓고 구성원들은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과정에서 파생된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방식으로서, 공통의 목적과 활동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다수인의 새로운 결합 방식으로, 이른바 Web3 관련 비지니스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영역의 주목을 받고 있다.¹⁾

또한, DAO는 새로운 단체라는 점에서 이를 기존의 회사 또는 단체 개념 중 어떤 개념으로 포섭할지에 대하여 규범적 차원의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DAO의 다면적 성격 중 어떤 측면에 주목할지에 따라 다양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 DAO는 기존의 우리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책임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유한회사나 합명회사처럼 볼 수도 있고 투자조합처럼 볼 수도 있다. DAO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자간의 계약을 스마트계약에 의하므로, 적어도 서로간의 인적 신뢰성이 아닌 이러한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의사결정구조에 기반하여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이와 관련해서는, 이석민, “DAO의 법제적 이슈에 대한 시론”, 최신외국법제정보 2022년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오늘 언급된 많은 드러난, 또는 잠재된 논점 중에, 본 토론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환기하고자 한다.

첫째, DAO를 (주로) 사법적 측면에서 규제해나가는 것은 미국 와이오밍주, 켄터키 주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법적 측면의 연구와 규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오늘 현재 모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현재 DAO와 관련되어서는 직접 실무를 해 보시거나 연구를 어느정도 진행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논의를 해 보기애 적절한 자지라고 생각한다.

둘째, DAO는 공법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법제적으로 올바른 규제방안을 궁리 할 수도 있다. 본 토론자가 속한 한국DAO법연구회는 ‘문화유산 보존활용’ 또는 ‘지방자치(지역재생)’ 이슈와 관련하여 DAO의 가능성에 주로 착목하면서 2022년 초 출범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들을 꾸준히 연구해보려 한다. 다만, 탈중앙화된 자율적 조직이라는 이상과 다르게, DAO는 실제로 운영해보면 대개는 어느 정도 중앙화된 형태의 의사결정주체나 실행주체가 역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하고, 공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DAO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해외의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주목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²⁾ 토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상입니다.

2)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DAO법연구회는 ‘문화유산 보존활용’ 또는 ‘지방자치(지역재생)’과 관련한 사례 연구 및 토론을 이어왔으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DAO(NFT 등 활용)를 구성해 지역활성화를 꾀하려는 시도들을 알게되었고 이의 추이를 주목하고 연구하고 있다.